

# 학교법인 예운학원

2023학년도 1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명	2명
재적임원	9명	2명
참석임원	7명	0명

1. 일시 : 2023년 03월 29일 15:00(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03월 17일)

2. 장소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이사 ( 7 인 ) : 지홍원, 윤지영, 윤지현, 이정재, 김주현, 이재웅, 손재근

- 감사 ( 0 인 ) :

○ 불참임원

- 이사 ( 2 인 ) : 김영철, 김학만

- 감사 ( 2 인 ) : 도형집, 이언

○ 참석직원 : 예운학원 법인사무국 박만성 과장

4. 안건

(1) 2023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 신규 전임교원 디지털평생융합학부 이 외 6명, 총 7명 임용에 관한 사항

5. 회의내용

15:00 정각에 법인과장이 교원현황과 관련하여 회의자료의 내용을 이사님들에게 보고한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간서명	이사	이정재	이사	이재웅	이사	김주현
-----	----	-----	----	-----	----	-----

의장(지홍원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6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 18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예운학원 산하 성운대학교의 2023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건입니다. 이 안건은 성운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준비된 회의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윤진영) : 회의자료를 검토해보시면, 우선 디지털평생융합학부 이 대상자는 전공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평생교육 관련 산업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 대상자도 전공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타 대학 강의 경력 및 우리 대학 조교수 경력이 있습니다.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김 대상자는 사회복지 관련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2급 등 다양한 전공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인주 대상자는 관련 전공 석사학위 및 다수의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대상자는 전공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20년 이상의 전공 관련 산업체 경력은 물론 타 대학 특임교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에서 교육팀장으로 14년간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양학부 전 대상자는 교육학 전공을 박사 수료하고 교육 관련 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관련 자격 및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용 자격 기준에 적합한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 7명을 조교수로 추천하였으며, 더불어 추천된 신규임용 대상자들의 임용기간을 [붙임]과 같이 임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 7명의 임용안(임용기간 포함)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사(이경재) : 추천된 신규 임용대상자들 전공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상자 모두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김주현) : 이경재 이사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다. 추천된 신규 임용 대상자들 모두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해낼 것으로

간서명	이 사	이 경 재	이 사	김 주 현	이 사	김 주 현
-----	--------	-------------	--------	-------------	--------	-------------

로 기대됩니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2023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 임용건(임용기간 포함)에 대하여 찬성,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살피며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이사 7명 중 7명 찬성 표결함)

의장(지홍원이사장) :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18조 그리고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성운대학교 신임 전임교원 7명의 임용안(임용기간 포함)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사 전원 : 예

## 6. 간서명자 선출

대표 간서명자로 3인은 이경재이사, 이재웅이사, 김주현이사를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는 윤진영이사의 동의와 손재근이사의 재청으로 간서명자로 선정하다.

## 7. 폐회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간서명	이 사	이 경 재	이 사	이 재 웅	이 사	김 주 현
-----	--------	-------------	--------	-------------	--------	-------------

[붙임]

### 2023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명단

연번	소속학과	성명	직급	임용기간
1	디지털평생융합학부	이	조교수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	2023.03.31.~2024.03.30.
2	디지털평생융합학부	성	조교수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	2023.03.31.~2024.03.30.
3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김	조교수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	2023.03.31.~2024.03.30.
4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석	조교수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	2023.03.31.~2024.03.30.
5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전	조교수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	2023.03.31.~2024.03.30.
6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김	조교수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	2023.03.31.~2024.03.30.
7	교양학부	전	조교수	2023.03.31.~2024.03.30.

2023년 03월 29일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 홍원 (인)

이 사

윤 진 영

윤진영

이 사

윤 지 현

윤지현

이 사

이 경 재

이인경재

간서명	이 사	이 경 재	이 사	이 사	이 사	김주현
-----	-----	-------	-----	-----	-----	-----

이 사 김 주 현 김주현

이 사 이 재 응 이재응

이 사 손 재 근 손재근

간서명	이 사	이 재 응	이 사	이재응	이 사	김주현
-----	--------	-------	--------	-----	--------	-----

# 학교법인 예운학원

2023학년도 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9명	2명
재적임원	9명	2명
참석임원	7명	0명

1. 일 시 : 2023년 03월 29일 15:30(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03월 17일)

2.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60. 4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이사 ( 7 인 ) : 지홍원, ~~이재원~~, ~~이재원~~, 이경재, 김주현, 이재웅, 손재근

- 감사 ( 0 인 ) :

○ 불참임원

- 이사 ( 2 인 ) : 김학만, 김영철

- 감사 ( 2 인 ) : 도형집, 이언

○ 참석직원 : 예운학원 법인사무국 박만성 과장

4. 안 건

• 정관변경 안

5. 회의내용

15:30정각에 법인과장이 이사회의 안전에 관련하여 회의자료의 내용을 이사님들에게 보고한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금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언합니다.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번 안건은 사립학교법 제45조 및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

간서명	이사	이 경 재	이사	이 재 웅	이사	김 주 현
-----	----	-------	----	-------	----	-------

100조(정관변경)에 의거하여 지난 2월 7일 개정 한 정관을 교육부에 보고 후 이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고등직업교육정책과-1602, 2023.02.27.)이 내려와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며, 하부조직과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회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김주현) : 교육부에서 시정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니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53조, 제53조의2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의 경우 임면이 아닌 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임면을 임용으로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정관 제43조(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및 제64조(정년)에서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17조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되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강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고 있으며,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할 때 교원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을 강사와 같이 대학의 장이 임용하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기존대로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 시정요구와 별개로 제93조(하부조직) 제1항에서 국제혁신교류처를 대외협력처로 개정하고 제3항 국제혁신교류처장을 대외협력처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사(손재근) :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8조, 제1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50조, 제60조, 제61조, 제73조, 제76조에서 임면을 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제43조 제2항 제4호 겸임교원을 삭제하고, 제3항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포함하여 비전임교원으로 개정하는 것, 제64조의 비전임교원을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 제93조(하부조직) 제1항, 제3항 개정에 관한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사(이재웅) : 손재근이사의 찬성에 동의합니다.

이사(윤진영) : 이재웅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간서명	이사	이재근	이사	이재웅	이사	김주현
-----	----	-----	----	-----	----	-----

의장(지홍원이사장) :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8조, 제1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50조, 제60조, 제61조, 제73조, 제76조에서 임면을 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제43조 제2항 제4호 겸임교원을 삭제하고, 제3항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포함하여 비전임교원으로 개정하며, 제93조 제1항, 제3항을 개정한다는 원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살펴서 의견을 기다린다.)

의장(지홍원이사장) :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이사 7명 중 7명 찬성 표결함)

의장(지홍원이사장) : 예, 저를 포함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제18조, 제1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50조, 제60조, 제61조, 제73조, 제76조에서 임면을 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제43조 제2항 제4호 겸임교원을 삭제하고, 제43조 제3항 및 제64조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포함하여 비전임교원으로 개정하는 것, 제93조 제1항, 제3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이사회를 폐회할 것을 선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사전원 : 예

## 6. 간서명자 선출

대표 간서명자로 3인은 이경재이사, 이재웅이사, 김주현이사를 대표 간서명자로 선임하는 윤진영이사의 동의와 손재근이사의 재청으로 간서명자로 선정하다.

## 7. 폐회선언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간서명	이사	이 경 재	이사	이 재 웅	이사	김 주 현
-----	----	-------	----	-------	----	-------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이사회의 기능) ① (생략) 1.~4. (생략)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임면</u>에 관한 사항 6.~8. (생략)</p>	<p>제18조(이사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임용</u>에 관한 사항 6.~8. (현행과 같음)</p>
<p>제1관 자격, <u>임면</u>, 복무 및 보수</p>	<p>제1관 자격, <u>임용</u>, 복무 및 보수</p>
<p>제41조(학교의 장의 <u>임면</u>)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u>한다. ② (생략)</p>	<p>제41조(학교의 장의 <u>임용</u>)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용</u>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42조(학교의 장의 <u>임면</u>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 <u>임면</u>될 수 없다. 1.~2. (생략)</p>	<p>제42조(학교의 장의 <u>임용</u>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 <u>임용</u>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p>
<p>제43조(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u>임면</u>) ①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u>한다. ②학교의장 이외의 교원을 <u>임면</u>명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u>임면</u>한다. 1.~3. (생략) <u>4. 겸임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u>  ③학교의 장과 제2항의 교원 이외의 <u>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대학의 장이 임면</u>한다. 다만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생략)</p>	<p>제43조(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u>임용</u>) ①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용</u>한다. ②학교의장 이외의 교원을 <u>임용</u>명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u>임용</u>한다. 1.~3. (현행과 같음) <u>4. &lt;삭제&gt;</u> ③학교의 장과 제2항의 교원 이외의 <u>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u>, 강사는 대학의 장이 <u>임용</u>한다. 다만 <u>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u> ④ (현행과 같음)</p>
<p>제43조의 2(교원인사규정)①교원의 <u>임면</u>에</p>	<p>제43조의 2(교원인사규정)①교원의 <u>임용</u>에</p>

간서명	이사 이경래	이사 이기용	이사 권주현
-----	--------	--------	--------

<p>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p> <p>제44조(임면에 관한 보고) 교원을 <b>임면</b>(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b>임면</b>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p>	<p>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 및 정관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p> <p>제44조(임용에 관한 보고) 교원을 <b>임용</b>(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b>임용</b>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p>
<p>제5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b>임면</b>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li> <li>2. 학교의 장이 부총장의 보직을 <b>임면</b>제청하고자 할 때 그 동의에 관한 사항</li> <li>3. (생략)</li> </ol> <p>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b>임면</b>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p>제5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b>임용</b>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li> <li>2. 학교의 장이 부총장의 보직을 <b>임용</b>제청하고자 할 때 그 동의에 관한 사항</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b>임용</b>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p>
<p>제60조(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 (생략)</p> <p>②직무수행능력의 부족등으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b>임면</b>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60조(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직무수행능력의 부족등으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b>임용</b>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당해 교원의 <b>임면</b>권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교원에게 휴직을 명할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생략)</li> </ol>	<p>제6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당해 교원의 <b>임용</b>권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교원에게 휴직을 명할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생략)</li> </ol>
<p>제64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p>	<p>제64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p>

간서명	이사	이정재	이사	이민용	이사	김주현
-----	----	-----	----	-----	----	-----

<p>47조를 준용하되, <b>비전임교원</b> 및 강사의 정년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p>	<p>47조를 준용하되, <b>겸임교원, 초빙교원 등</b> (이하 '<b>비전임교원</b>'이라 한다) 및 강사의 정년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p>
<p>제73조(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b>임면</b>권자는 그 소속 교원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73조(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b>임용</b>권자는 그 소속 교원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76조(징계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b>임면</b>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b>임면</b>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76조(징계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b>임용</b>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b>임용</b>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3조(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교육혁신본부, 기획처, 학사지원처, 학생지원처, 입시지원처, <b>국제혁신교류처</b>, 행정지원처,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국제어학원등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수 있으며, 총장 직속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 학사지원처장, 학생지원처장, 입시지원처장, <b>국제혁신교류처장</b>, 행정지원처장, 부속·부설기관장, 총장 직속기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p> <p>④ (생략)</p>	<p>제93조(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교육혁신본부, 기획처, 학사지원처, 학생지원처, 입시지원처, <b>대의협력처</b>, 행정지원처,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국제어학원등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수 있으며, 총장 직속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교육혁신본부장, 기획처, 학사지원처장, 학생지원처장, 입시지원처장, <b>대의협력처장</b>, 행정지원처장, 부속·부설기관장, 총장 직속기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간서명	이사	이경재	이사	이재홍	이사	김주현
-----	----	-----	----	-----	----	-----

2023년 03월 29일

학교법인 예운학원 이사장 지홍원 (인)

이사 윤진영 원진영

이사 윤지현 윤지현

이사 이경재 이(원)경재

이사 김주현 김주현

이사 이재웅 이재웅

이사 손재근 손재근

간서명	이	이	이	이	이	이
	사	사	사	사	사	사
	0	경	이	이	김	주
		재	재	주	현	현